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9. 4. 22. (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
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
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19년 4월 9일

○ 회부일자: 2019년 4월 11일

3. 제안이유

폐교재산 매각 2건의 공유재산 처분 사유 발생으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3조에 따라,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

4. 주요내용

○ 재산의 처분

(단위: m²,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수 량	금 액
토지	수정초 삼가폐교 토지 처분	14,996.00	980,000
	수정초 북암폐교 토지 처분	15,922.00	870,000
건물	수정초 삼가폐교 건물 처분	667.00	150,000
	수정초 북암폐교 건물 처분	1,167.67	400,000
계		32,822.67	2,400,000

5. 검토의견

- 보은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장은 2018년 3월, 북암분교장은 2000년 3월 폐교되었음.
- 현재 폐교된 두 개의 분교장은 미활용 상태이며, 보은군에서 속리산면 지역주민을 위한 농촌체험관 조성부지로 활용하고자 매각요청이 있어, 2019년 상반기 처분(매각) 예정임
- 향후 자체 활용 계획이나 임대 계획이 없는 폐교 재산의 매각은 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.